

대지조성사업자

■ 업무내용

연간 1만㎡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

■ 등록기준

1. 자본금

법인	개인
3억원 이상	6억원 이상

※ [건설산업기본법]에 의한 건축공사업,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시 등록기준자본금, 기술인력 중복인정가능

2. 기술능력

기술자격
1인 -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

※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(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 하는 사람을 말하며,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3. 시설·장비

사무실
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등록을 하려는 시·도 안에 있어야 한다.
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15~20일 이내 소요